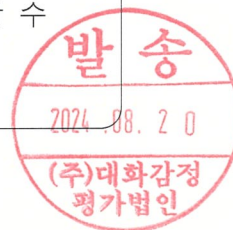


# 감정평가서

## APPRAISAL REPORT

건명	지흥군 소유물건 ( 2024타경401680 )
의뢰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법보좌관 채주석
평가서 번호	대화 11-2404-2-0018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감정평가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 시 확인은행 이외의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개작(改作)·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대화감정평가법인 강원지사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507 신세기타워 1301호  
대표전화 : (033)742-8161 FAX : (033)742-8163



# (토지)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차경은

차 경 은

(주)대화감정평가법인

강원지사

지사장

차 경 은



감정평가액

이억일천삼백사십일만육천원정 (₩213,416,000.-)

의뢰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법보좌관 채주석

평가목적  
(제출처)

법원경매  
(제출처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소유자  
(대상업체명)

지흥근  
(2024타경401680)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4. 08. 19

2024. 08. 12 ~  
2024. 08. 19

2024.08.19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평

토지

7,622

토지

7,622

28,000

213,416,000

가

합 계

₩213,416,000.-

내

이

하

여

백

용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임채성

임 채 성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 대상물건 개요

###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광격리 소재 0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에 대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임.

### 2. 대상물건 현황

토지 기호	소재지	지 번	면 적 (㎡)	지 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형상지세	개별 공시지가 (원/㎡)
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광격리	산 77	7,622.00	임야	계획관리	자연림, 일부 묘 지 및 도로	부정형 완경사	5,990

### 3.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2024.08.19임.

###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대상물건에 대한 가격조사 및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4.08.12~2024.08.19임.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Ⅱ.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 1. 기준가치 결정 및 이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토지등(이하 “대상물건” 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목적에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 2. 감정평가 조건

의뢰인 측에서 제시한 특별한 감정평가의 조건은 없음.

### 3. 특이 및 유의 사항

- III.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3.그 밖의 감정평가 관련사항' 참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Ⅲ.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 1.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하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 ① 비용성에 기초하여,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을 하는 원가법
- ② 시장성에 기초하여, 대상물건과 동일·유사한 거래사례와 비교하는 거래사례비교법
- ③ 수익성에 기초하여, 대상물건의 장래 현금흐름 등을 할인·환원하는 수익환원법
- ④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보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 등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2.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평가방법과 합리성 검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되, 다른 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3. 그 밖의 감정평가 관련 사항

- 본건 기호(1) 토지는 인접필지와의 지적경계가 다소 불분명한 상태로서, 경계는 목측 및 위성지도 등에 의하여 판단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필요에 따라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정확한 지적경계 및 현황 등을 재확인 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1) 토지 위 지상에 수기의 분묘가 소재하나 이에 구매됨 없이 평가하였으며, 그 면적은 지적도면, 목측 및 보측 등에 의거하여 개략적으로 산출한 후, 분묘가 본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단가를 병기하였으니 경매(입찰)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위지상에 자생하는 자연생 입목 등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며, 지형적 요인에 의해 식별되지 않은 분묘 소재 가능성이 있는 바 업무 진행시 분묘 소재 여부 등을 재확인 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1) 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인 바, 그 면적은 지적도면 등에 의거하여 개략적으로 산출한 후, 해당 부분이 본건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요인에서 적정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토지 기호(1) 토지는 인접 및 인근으로 진출입 도로가 소재하나, 인접필지상에 지적상 도로가 소재하지 아니하여, 진출입에 따른 권리관계 및 도로 사용 가능여부 등은 경매(입찰) 진행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1) 토지의 개발행위가능 여부는 도로조건 및 경사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바, 추후 개발행위 등의 가능 여부는 경매(입찰) 진행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4.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

###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산출내역

#### (가) 감정평가 개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 제2항에 의거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함.

#### (나)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시점 현재 공시되어 있는 표준지 중에서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① 하는 표준지로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 및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고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함.

② 위의 표준지 선정 기준에 의거 아래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음.

기호	소재지	지번	면적(m <sup>2</sup>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m <sup>2</sup> )	비고 (공시년도)
A	호저면 광격리	산4	5,256.00	임야	자연림	계획관리	세로(가)	부정형	완경사	7,040	2024.01.01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다) 시점수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 소재 시·군·구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을 산정하여 적용하되, 기준시점 당시에 해당 월의 지가변동률이 조사 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 발표 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

구분	적용기간	시점수정치	지가변동률(%)	비 고
원주시 계획관리	2024.01.01 ~ 2024.08.19	1.00960	0.96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4.01.01~24.08.19) (계획관리)  2024.01.01 ~ 2024.06.30 : 0.690 2024.06.01 ~ 2024.06.30 : 0.161  $(1 + 0.00690) * (1 + 0.00161 * 50/30)$ ≒ 1.00960

### (라) 지역요인 비교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비교치는 대등함.  
(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마) 개별요인 비교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의 최유효이용을 판정·비교하여 산정한 격차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별요인 비교치는 다음과 같음.

(임야지대) 개별요인		
조건	항목	세항목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등	인근역, 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지세, 방위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등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행정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 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기호	비교 표준지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자연) 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계
1	A	-	1.00	1.25	-	1.00	0.99	1.238
1	본건은 표준지 대비 환경(자연)조건(지세 등) 우세. 기타조건(본건 일부 도로 등) 열세.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바) 그 밖의 요인 보정

### ①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과 국토교통부유권해석(건설부 토정30241- 36538, 1991. 12. 28.), 대법원판례(1998. 7. 10. 선고 98두6067, 1993. 9. 10. 선고 92누16300) 등의 취지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평가선례와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 ②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방식

$$\frac{\text{비교사례 기준 표준지 단가}}{\text{기준시점의 표준지 단가}} = \frac{\text{비교사례 단가} \times \text{시점수정치} \times \text{지역요인 비교치} \times \text{개별요인 비교치}}{\text{비교표준지 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치}}$$

### ③ 인근 평가사례

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 (㎡)	지목	기준시점	평가단가 (원/㎡)	개별 공시지가 (원/㎡)	평가 목적	이용상황	용도 지역	비고
a	횡성군 횡성읍 목계리	000	2,777.00	임야	2022.03.11	18,000	6,050	법원경매	자연림	계획관리	-
b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000	3,300.00	임야	2022.06.16	26,000	12,100	법원경매	자연림	계획관리	선정
c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000	2,380.00	임야	2021.11.29	24,000	10,200	법원경매	자연림	계획관리	-

### ④ 인근 거래사례

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 (㎡)	지목	거래시점	거래단가 (원/㎡)	개별공시지가(원/㎡)	이용상황	용도 지역	비고
가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000	3,899.00	임야	2023.07.30	18,209	8,430	자연림	계획관리	-
나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000	5,363.00	임야	2022.01.07	21,629	5,980	자연림	계획관리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㉞ 비교사례 선정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 위치하며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및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며 근거리에 위치하는 <기호 b> 사례를 선정함.

⑤ 보정치의 산정

기호	구분	기준단가 (원/㎡)	사정보정치 *)	시점수정치 *1)	지역 요인비 교치 *2)	개별 요인비교치 *3)	시산가격 (원/㎡)	격차율
		공시지가 (원/㎡)						
1	b	26,000	-	1.02872	1.00	0.840	22,467	3.161
	A	7,040	-	1.00960	-	-	7,108	

산정 내역

\* 표준지 및 평가사례의 경우 사정보정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거래사례의 경우 사정보정치는 대등함.

1) 시점수정

b	원주시	계획관리	2022.06.16	~	2024.08.19	:	1.02872
---	-----	------	------------	---	------------	---	---------

2) 지역요인 비교 :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대등함. (1.00)

3) 개별요인비교 [표준지/사례]

기호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자연)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계
b	-	1.05	0.80	1.00	1.00	1.00	0.840

b 표준지는 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등) 우세.  
환경(자연)조건(지세 등) 열세.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⑥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인근지역의 정상지가 수준, 평가선례, 거래사례 및 장래동향, 평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절한 평가액 결정을 위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증액 적용함이 타당시 됨.

비교표준지	적용 보정치	비고
A	3.16	-

### (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결정

산식: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시점수정치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기호	표준지 공시지가 (원/m <sup>2</sup> )	시점수정치	지역 요인 비교치	개별 요인 비교치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단가 (원/m <sup>2</sup> )	결정단가 (원/m <sup>2</sup> )
1	7,040	1.00960	1.00	1.238	3.16	27,805	28,000

### (아)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감정평가액 결정

기호	사정면적(m <sup>2</sup> )	토지단가(원/m <sup>2</sup> )	감정평가액(원)
1	7,622.00	28,000	213,416,000
합계	7,622.00	-	213,416,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산출내역

#### (가) 감정평가 개요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함.

#### (나) 비교 거래사례 선정

##### ① 인근 거래사례 현황

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 (㎡)	지목	거래시점	거래단가 (원/㎡)	개별 공시지가 (원/㎡)	이용상황	용도 지역	비고
가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000	3,899.00	임야	2023.07.30	18,209	8,430	자연림	계획관리	-
나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000	5,363.00	임야	2022.01.07	21,629	5,980	자연림	계획관리	선정

##### ② 비교 거래사례 선정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 위치하며 거래사례로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이 유사하여 비교 가능성이 있는 <기호 나>사례를 선정하였음.

#### (다) 사정보정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액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액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조사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

(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라) 시점수정

① 거래사례가 소재하는 거래일자로부터 기준시점까지 지가변동률은 다음과 같음.

② 기준시점 당시 해당 월의 지가변동률이 조사 발표되지 아니하여 최종 발표 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

기호	구분	적용기간	시점수정치	지가변동률(%)	비 고
나	원주시 계획관리	2022.01.07 ~ 2024.08.19	1.04599	4.59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2.01.07~24.08.19) (계획관리)  2022.01.01 ~ 2022.01.31 : 0.254 2022.02.01 ~ 2022.02.28 : 0.297 2022.03.01 ~ 2022.03.31 : 0.319 2022.04.01 ~ 2022.04.30 : 0.287 2022.05.01 ~ 2022.05.31 : 0.404 2022.06.01 ~ 2022.06.30 : 0.312 2022.07.01 ~ 2022.07.31 : 0.242 2022.08.01 ~ 2022.08.31 : 0.254 2022.09.01 ~ 2022.09.30 : 0.233 2022.10.01 ~ 2022.10.31 : 0.202 2022.11.01 ~ 2022.11.30 : 0.111 2022.12.01 ~ 2022.12.31 : 0.052 2023.01.01 ~ 2023.12.31 : 0.629 2024.01.01 ~ 2024.06.30 : 0.690 2024.06.01 ~ 2024.06.30 : 0.161  $(1 + 0.00254 * 25/31) * (1 + 0.00297) * (1 + 0.00319) * (1 + 0.00287) * (1 + 0.00404) * (1 + 0.00312) * (1 + 0.00242) * (1 + 0.00254) * (1 + 0.00233) * (1 + 0.00202) * (1 + 0.00111) * (1 + 0.00052) * (1 + 0.00629) * (1 + 0.00690) * (1 + 0.00161 * 50/30)$ $\approx 1.04599$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마) 지역요인 비교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의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비교치는 대등함.(1.000)

### (바) 개별요인 비교

#### ① 대상토지 / 거래사례와의 비교

기호	사례 기호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자연) 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계
1	나	-	1.05	1.25	-	1.00	0.99	1.299
1	본건은 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우세. 환경(자연)조건(지세 등) 우세. 기타조건(본건 일부 도로 등) 열세.							

###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결정

산식: 거래사례 토지단가 × 사정보정치 × 시점수정치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기호	거래사례 토지단가(원/m <sup>2</sup> )	사정 보정치	시점수정치	지역 요인 비교치	개별 요인 비교치	산정단가 (원/m <sup>2</sup> )	결정단가 (원/m <sup>2</sup> )
1	21,629	1.000	1.04599	1.00	1.299	29,388	29,000

### (아)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감정평가액 결정

기호	사정면적(m <sup>2</sup> )	토지단가(원/m <sup>2</sup> )	감정평가액(원)
1	7,622.00	29,000	221,038,000
합 계	7,622.00	-	221,038,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V. 감정평가액 결정

(가) 각 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

구분	사정면적(m <sup>2</sup> )	토지단가(원/m <sup>2</sup> )	감정평가액(원)
공시지가기준법	7,622.00	-	213,416,000
거래사례비교법	7,622.00	-	221,038,000

(나) 시산가액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상기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에 의하여 그 적정성이 지지되고 있어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으며, 감정평가목적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 토지 감정평가액 결정

기호	사정면적(m <sup>2</sup> )	토지단가(원/m <sup>2</sup> )	감정평가액(원)	비 고
1	7,622.00	28,000	213,416,000	-
토지 합계액	7,622.00	28,000	213,416,000	-

# 토지 감정평가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광격리	산77	임야	계획관리지역	7,622	7,622	28,000	213,416,000	분묘소재 감안단가 @27,000, 일부 묘지 및 도로
<b>합 계</b>								₩213,416,000.-	
				이	하	여	백		

#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광격리 소재 고산보건진료소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전, 임야, 주택 등으로 형성된 농촌지대임.

##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상황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보통시됨.

## (3)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 일부 묘지 및 도로임.

## (4)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일부 도로 및 인접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3-02),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폭발물관련:1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Ⅲ.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3.그 밖의 감정평가 관련사항' 참조.

## (7) 공부와의 차이

Ⅲ.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3.그 밖의 감정평가 관련사항' 참조.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Ⅲ.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3.그 밖의 감정평가 관련사항' 참조.

# 광역 위치도

4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광격리 산77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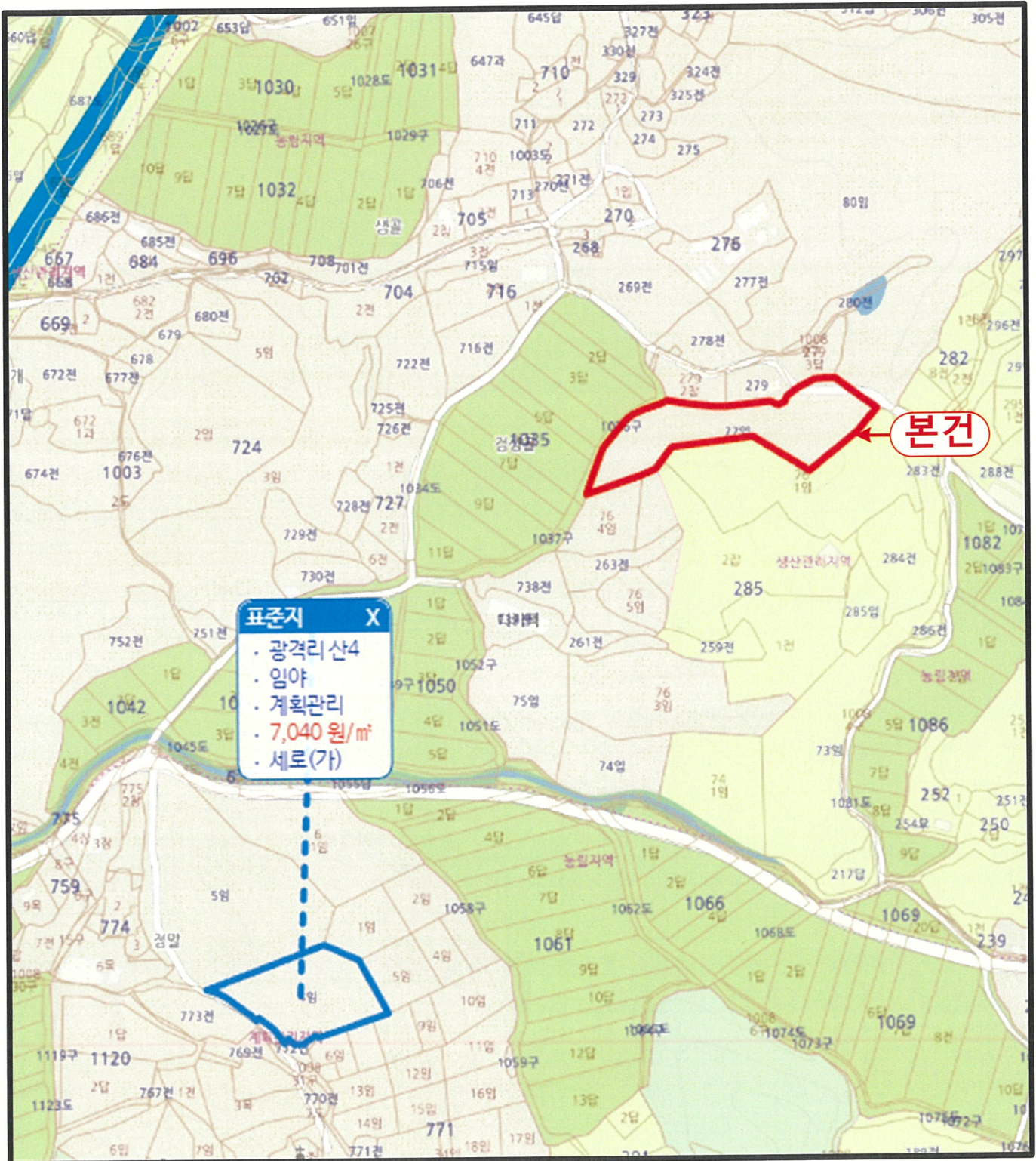


# 상세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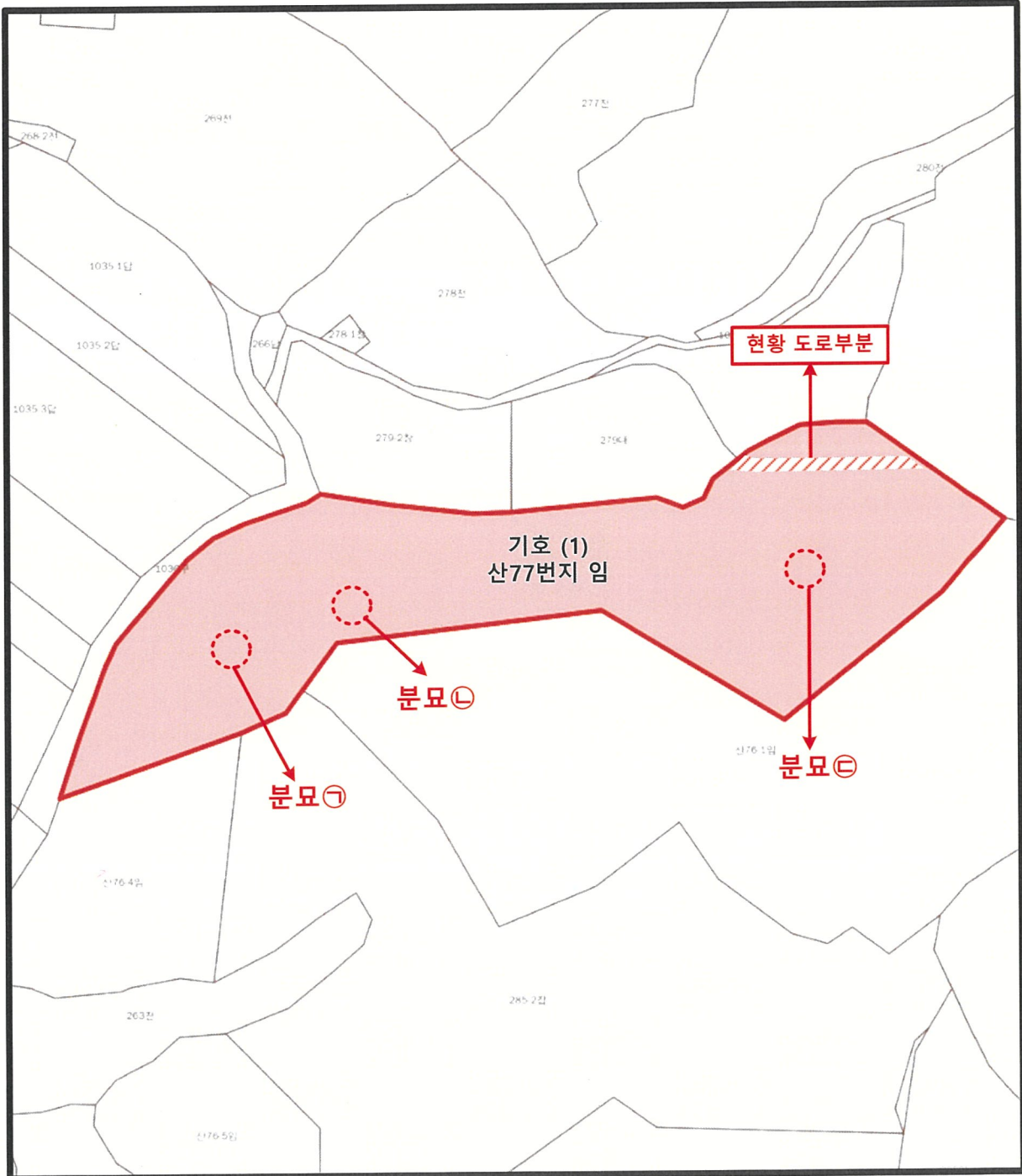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광격리 산77번지



# 지 적 도



# 현 황 사 진



【 본건 및 인근전경 】



【 본건 및 인근전경 】

# 현 황 사 진



【 본건 및 인근전경 】



【 본건 위 지상 분묘(ㄱ) 】

# 현 황 사 진



【 본건 위 지상 분묘(ㄴ) 】



【 본건 위 지상 분묘(ㄷ) 】